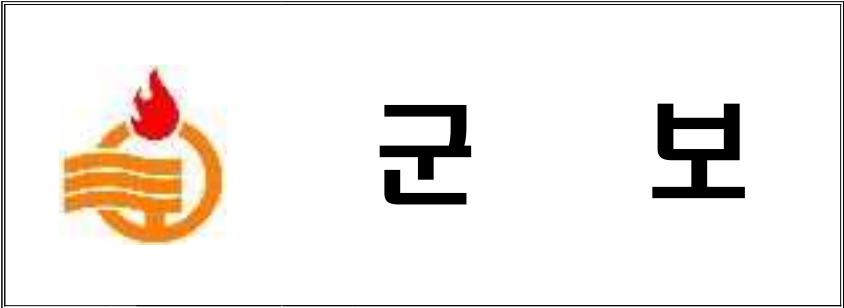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430호

2026년 8월 13일(목)

- 차 례 -

입 법 예 고

제2026-30호	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- 1
제2026-31호	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- 6
제2026-32호	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- 11

공 고

제2026-1195호	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[계양~강화 고속도로 - 16 건설공사(7공구)]
제2026-1211호	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「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- 18 (농어촌도로101호선) 확포장공사」

입법예고

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- 30호

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8월 13일

강 화 군 의 회 의 장**1. 제안이유**

-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군민의 협력 및 계획 수립(안 제4조 ~ 제5조)
- 실태조사 및 교육(안 제6조 ~ 제7조)
- 홍보 및 포상(안 제8조 ~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: 별도 첨부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 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, 전화 032-930-3757, 팩스 032-930-3509, 주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서 제출 서식

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

제출자	해당 조항	의견	비고
주 소 : 성 명 :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관련자“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관련자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차별금지“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 인권보장“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5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
제4조(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)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

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강화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
4.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
5.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,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교육) ① 군수는 군민과 강화군 소속 공무원, 장애인, 장애인복지시설의 단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

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9조(포상)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「강화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- 31호

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13일

강 화 군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제6조)
-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(안 제7조 ~ 제8조)
- 홍보 및 포상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제정 조례안: 별도 첨부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 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, 전화 032-930-3757, 팩스 032-930-3509, 주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서 제출 서식

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

제출자	해당 조항	의견	비고
주 소 : 성 명 :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용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.
2. “여성고용사업장”이란 강화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여성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자의 책무)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and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, 국가와 군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

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

2.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
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

4.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군 소재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

5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홍보)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개인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「강화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- 32호

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8월 13일

강 화 군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(안 제3조 ~ 제4조)
- 소유자 등의 의무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 ~ 제6조)
- 구조·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, 문화 조성(안 제7조 ~ 제9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10조)

3. 제정 조례안: 별도 첨부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 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, 전화 032-930-3757, 팩스 032-930-3509, 주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서 제출 서식

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

제출자	해당 조항	의견	비고
주 소 : 성 명 :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반려동물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.
2. “소유자 등”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민의 참여와 협력) ① 강화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군민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소유자 등의 의무)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·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·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·스트레스·갈증·배고픔·영양불량·부상·질병,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·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
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·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반려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·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,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·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)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

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강화군 공고 제2026 - 1195호

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

“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(7공구)”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2일

강 화 군 수

1. 사 업 명 : 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(7공구)
2. 사유 : 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(7공구)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
3. 위 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12-10번지 일원
4. 사 업 량 : 연장 L=4.68km, 노선평 B=23.4m(왕복4차로)
5. 시 행 자 : 한국도로공사
6. 사업기간 : 도로구역결정 고시일로부터 84개월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, 위치도 및 관계도서 : 공람장소 비치
8. 공람기간 및 장소
 -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(2026. 8. 12. ~ 2026. 8. 26.)
 - 공람장소 : 강화군 도로교통과
 - 의견서 제출처 : 강화군 도로교통과(의견서 서식 비치)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로교통과(☎ 032-930-3490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민 등의 의견서

사업명	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(7공구)	
사업장 위치	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12-10번지 일원	
사업자	한국도로공사	
의견제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의견	소유토지:	

「도로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

처리절차

주민의견 제출

주민



접수

해당 시·군



의견수렴 여부 결정

사업시행자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강화군 공고 제2026-1211호

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

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2일

강 화 군 수

1. 노선지정(변경) 내용

구분	읍면	도로의 종 류	노선명	노선 번호	도로구간		총연장	주요 경과지	개발계획		지정(변경) 사유
					기점	종점			도로 너비 (m)	포장 너비 (m)	
당초	서도면	농어촌 도로	나주선	101 호선	주문도리 365	주문도리 산196-3	2.4km	주문 도리	8.5~9.5	8.5~9.5	
변경	서도면	농어촌 도로	나주선	101 호선	주문도리 365-1	주문도리 산196-3	2.4km	주문 도리	8.5~9.5	8.5~9.5	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

2. 변경사항

-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노선 지정면적 정리(변경)
 - 당초: 40,668㎡ → 변경: 40,653.8㎡ (감 14.2㎡)
- 종전 지구계와 확정측량에 따른 지구계는 동일하며,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확정필지면적을 반영한 사항임.
- 노선의 연장·폭원·선형 및 지구계 등 그 밖의 지정사항은 종전과 같음.

3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인천광역시 강화군수
- 주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

4.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설과(☎ 032-930-3732)

